

## 한국형 간호자율조정기구 모델(안) 개발 연구\*

유숙자\*\* · 양 수\*\*\* · 유양숙\*\*\*\* · 용진선\*\*\*\*  
이선미\*\*\*\*\* · 홍진의\*\*\*\*\* · 이기령\*\*\*\*\*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삶의 질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급격히 높아짐에 따라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보건의료 시장의 변화, 국제적인 의료 시장의 개방, 고학력·정보화 사회 그리고 인접 학문 분야와의 경쟁 심화 등으로 간호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선진국은 의료 소비자를 보호하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전문직의 자율조정기구(self-regulatory body)를 발전시켜 오고 있으며, 간호 분야에서도 간호사의 권익을 보호하는 간호대표단체와는 별개로 국가에서 일부 업무를 위임받아 간호전문인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 대표를 참여시켜 공익단체로서 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일부 선진국에서의 간호자율조정기구(Self-regulatory body in nursing)는 간호사와 일반 소비자들이 모여 주요 사안을 결정하는 공공기관으로 국가시험, 면허발부 및 갱신 관리, 외국 간호사 자격관리, 간호업무범위 설정, 업무 위임에 대한 사항, 무면허 간호행위 규제, 민원에 대한 조사 및 처리, 간호사 질 관리, 간호사 정계 및 계도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면허관련 공동연구팀, 2003). 간호자율조정기구의 주된 목적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간호전문직 종사자가 주축이 되어 정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간호단체 자체 규정에 의해 자율적으로 간호사의 질을 관리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규칙을 제정해 관리하는 데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진정한 국민건강 옹호자로서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 새천년을 맞아 '한국간호 2000'이라는 비전을 제시, 간호업무의 전문화를 바탕으로 보건의료계의 주요 인력으로 거듭날 것임을 선포하였다. 이를 위해 협회는 4차 장기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10대 주요 정책과제로 조직 강화, 정보통신체계 구축, 대정부 활동 강화, 전문직 간호사 위상 제고, 간호교육 수준 향상, 회원복지 증진, 간호사업 홍보 및 출간사업 활성화, 연수원 운영 활성화, 대한간호협회 회관 신축, 국제교류 강화를 제시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다(대한간호협회, 2000, 2001, 2002, 2003). 또한 대한간호협회에서는 독자적으로 간호자율조정 기구제도를 도입해 체계적인 간호발전을 도모하고자 2004년 재단법인 한국간호평가원이 정부로부터 승인을 얻는 개가를 올렸다. 한국간호평가원은 사회가 요구하는 간호의 책무를 다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간호사 양성과 간호 서비스의 질적 보장을 위해 간호교육 전반에 걸친 인정평가사업

\* 이 연구는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호스피스 교육 연구소에서 대한간호협회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시행한 연구임

\*\*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호스피스 교육연구소 연구소장

\*\*\*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교수(교신저자: sooy@catholic.ac.kr)

\*\*\*\*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부교수

\*\*\*\*\*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전임강사

\*\*\*\*\*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연구조교

과 간호사의 면허 및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관리에 관한 연구, 간호학 분야의 저작권 관리를 시행함으로써 간호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간호 및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한국간호평가원 정관, 2004).

현재 한국간호평가원은 자율조정기구로서의 주된 역할 중 국가시험관리, 간호사 면허부여 및 등록관리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정계에 관한 법적 권한이 없는 상태다. 또한 간호법의 부재에 따라 간호자율규제기구로서 독립적으로 권한을 위임 받아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자율조정기구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같이 한국 의료계에서는 이러한 법적 권한을 위임받은 자율조정기구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국내에서 이와 관련해 논의되고 있는 기구로 의료인면허관리기구(안)가 있다. 2001년 11월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각료회의 합의에 따라 WTO 도하 개발어젠다(DDA) 협상이 2005년까지 진행 중이다. 이에 선진국 수준으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시급한 과제에 따라 정부와 의료계에서는 의료공동 대책위원회를 조직해 세계화의 압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기관들은 간호계와 관련된 방안 중 하나로 면허관리를 자율규제기구의 성격을 띤 한국간호면허원(안)을 개발해 관리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한국간호면허원(안)에 제안된 주된 권한과 임무로는 국가시험에 대한 방향 설정과 시험 대행 기관의 선정, 면허 신청자 적부 심사를 통한 면허 발부 및 등록, 면허갱신, 외국 간호사에 대한 자격기준 설정 및 심사, 간호교육과 간호실무표준 설정, 무면허 간호 행위 규제, 소비자 불만에 대한 조사 및 처리, 부적절한 간호행위에 대한 면허 제한 및 정지 등의 정계를 포함하고 있다(면허관련공동연구팀, 2003).

하지만 이 모델(안) 역시 독립된 면허관리기구의 설립을 위한 것이나, 여전히 간호면허관리기구는 의료인들의 전체 면허관리기구의 하부기구로 존재함으로써 독립적인 규제기능 수행이 보장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 간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이고도 전문적으로 간호교육 및 업무의 질적 향상을 위한 체계를 확립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권한을 위임 받은 독립적인 간호자율조정기구로서의 역할과 권한 확립이 시급하다. 즉 정부 당국과 간호 대상자들의 의견을 조정할 수 있으며, 자율적으로 간호의 교육과 질 관리를 규제하고 나아가 간호업무 전반에 걸쳐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질 향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기구의 정립

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간호자율조정기구의 발전에 대한 폭넓은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자율조정기구의 성격 및 역할, 타 기구와의 관계 정립에 대한 방향 설정을 위해 각종 문헌 및 해외 관련 기구의 사례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간호자율조정기구 모델(안)을 개발하는 것이다.

## 3. 용어정의

**간호자율조정기구:** 간호의 질 관리를 위한 일련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간호전문직 종사자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정부의 승인을 얻거나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기구이다.

## 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국내외 간호자율조정기구에 대한 문헌 고찰과 사례 분석을 통해 한국형 간호자율조정기구 모델(안)을 제시하기 위한 서술적 연구이며, 총 3단계로 실시되었다.

1단계: 현재 국내 간호자율조정관련 기구인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학회, 한국간호평가원, 면허관리기구(안)에 대한 문헌 고찰을 실시하여 이들 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분석하였다.

2단계: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태국, 일본의 간호자율조정관련 기구 현황에 대한 문헌 고찰과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내용은 기관의 성격, 사업내용, 조직/인력구성, 법적지위 및 권한, 재정, 간호협회나 정부와의 관계 등에 관한 내용이다.

3단계: 1-2단계에서 조사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팀이 논의하여 국내실정에 맞는 한국형 간호자율조정기구에 대한 모델(안)을 개발하였다.

## III. 연구 결과

### 1. 국내 간호자율조정 관련 기구의 기능과 역할 분석

현재 국내에서 간호자율조정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학회, 한국간호평가

원, 면허관리기구(안)에 대한 문헌 고찰을 실시하여 이를 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분석하여 요약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연구활동
- 간호교육 관련 연구
- 간호교육과정 표준설정
- 간호교육기관 및 간호교육프로그램 인정평가
- 간호교육실태 파악
- 보수교육
- 간호사업 홍보
- 간호 출판사업
- 학술활동
- 간호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 국제교류
-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시행
- 간호사 국가시험 시행
- 간호사 면허 부여
- 간호사 면허 유지, 관리
- 면허 관련 정계에 관한 사항
- 간호학분야 저작권 관리
- 간호실무표준 설정 및 개선
- 간호업무 개선 및 향상
- ICN 회원국간의 교환간호사 추진
- 대정부 활동
- 장학사업
- 간호사 권익옹호 및 경제복지를 위한 활동
- 국민건강증진사업
- 간호윤리 양양
- 연수원 운영
- 해외 간호 인력의 등록 및 자격기준 관리
- 간호사에게 자문제공
- 교육인력(교수진) 개발
- 기타

## 2. 외국 간호자율조정 관련 기구에 관한 문헌고찰 및 사례분석

외국의 자율조정기구는 일반 소비자 대표도 참여해 주요 사안을 결정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국가시험, 면허 발부 및 간호관리, 외국 간호사 자격관리, 간호업무범위 설정, 업무위임에 대한 사항, 무면허 간호행위 규제, 민원에 대한 조사 및 처리, 간호사 질 관리, 간호사 정계 및 제도 등을 담당한다(면허관련 공동 연구팀,

2003).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태국, 일본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미국

미국의 간호자율조정기구와 관련된 대표적 단체는 National League for Nursing(NLN)과 National Council of State Board of Nursing(NCSBN)을 들 수 있다.

#### (1) National League for Nursing (NLN)

NLN은 미국 내 모든 간호교육 프로그램의 주축으로서 정부로부터 승인 받은 지도기관이다(NLN, 2004). NLN은 미국 간호계에서 처음으로 간호교육의 보편적 표준 확립 및 유지를 위해 만들어진 조직으로 1983년 American Society of Superintendents of Training Schools for Nurses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다. 1912년 National League for Nursing Education(NLNE)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1917년 "Standard Curriculum for Schools of Nursing"을 편찬하였다. 후에 NLNE는 National Organization for Public Health Nursing과 Association for Collegiate Schools of Nursing을 통합해 NLN을 설립한 후 간호교육 프로그램을 인가하는 책임을 맡게 되었다. 또한 1993년 National League for Nursing Accrediting Commission(NLNAC)이라는 하부조직을 발족시켜 간호교육 프로그램 인정(accreditation) 사업만을 전담하도록 하였다. NLN은 1500개 이상의 간호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인정평가사업을 하고 있으며 간호사, 교육자, 소비자, 학생들로 구성된 1100여명의 회원이 있다. 한편 각 주/지역별 기구(National and Regional Constituent League)를 두고 있다.

#### ① 목적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서 다양한 인구집단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간호인력 양성 및 간호교육과정의 질적 향상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 ② 사업내용

- 간호교육 표준개발을 통해 간호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사업을 계획, 수행한다(Nursing education).
- 간호교육자의 전문성과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을 수행한다(Faculty development).
- 간호교육의 질 향상에 대한 연구사업을 주도한다 (Education research).

- 심층적으로 간호인력(실무자와 교육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한다(Data collection).
- 간호교육 효과와 간호실무 능력을 사정하고 평가 한다(Assessment and evaluation).
- 간호교육 프로그램을 옹호하기 위해 공공정책 결정에 관여한다(Public policy).

### ③ 조직 및 인력구성

NLN은 Board of governors에 의해 운영되는 한편 33개의 연합리그(National League for Nursing Constituent Leagues)와 5개 위원회 및 4개 자문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인정평가만을 담당하는 NLNAC로 구성되어 있다. 자문위원회는 연합리그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당면과제를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구성원들과 연합리그에 지침과 방향을 제공해주기도 한다. 4개의 자문위원회는 각각의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NLNAC는 NLN의 하부기관이자 미국 교육부에 의해 인정된 조직으로 모든 간호교육 프로그램(Post-secondary, Master degree, Baccalaureate degree, Associate degree, Diploma, and Practical nursing program)에 대한 전문적인 인정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매년 200여건의 인정서를 새로이 부여하거나 재부여하는 활동과 더불어 1700여개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감시를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참고로 인정(Accreditation)이란 비정부조직에 의한 자발적인 자율조정 과정으로, 질적인 교육을 위한 표준과 기준을 충족시킨다고 보여지는 교육기관이나 프로그램을 공인해주는 과정이다. NLN의 Board of governors에 의해 감독을 받지만 NLNAC는 15명으로 구성된 Board of Commissioners에 의해 자체적으로 운영된다. 대표성을 띤 인원 구성을 위해 9명의 Comissioner만 NLNAC에서 인준한 학교의 간호교육 차들로 구성됐으며 3명은 공공단체에서, 나머지 3명은 간호실무자에서 선출된다.

- ④ 법적지위 및 권한 : 정부로부터 승인 받은 비영리법인단체다.
- ⑤ 재정 : 인정평가수수료, 출판, 회비 등으로 조달된다.

### (2) National Council of State Board of Nursing (NCSBN)

미국에서 간호는 부적절한 자에 의해 실시됐을 경우 공중보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강력하게 규제되어야 하는 보건전문직종의 하나이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NCSBN이 간호규제(Nursing regulation)를 담당하고 있다(NCSBN, 2004). NCSBN은 61개의 NCSBN Board of Nursing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제적인 면허시험 실행과 면허부여·유지·정지 등에 관한 업무는 각 주의 Board of Nursing의 규정과 법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 NCSBN은 61개의 Board of Nursing이 표준을 따라 일관성 있고 통일성 있게 권한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지도기구인 셈이다. 또한 이를 위한 정보제공 및 연구 등을 통해 원활한 의사소통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주 차원의 실질적인 면허관리기구인 Board of Nursing은 주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간호를 규제하는 법적인 권한을 주 정부로부터 위임 받았으며 간호정의, 간호업무의 범위설정, 면허의 종류와 명칭결정, 주별 면허발급조건, 칭호 및 직함에 대한 보호, 정계처분을 위한 근거 마련, 간호법에 부합하는 규칙(rule)과 규제(regulation)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다. 이는 입법화된 Nurse Practice Act for a State를 근거로 수행된다. 구체적인 성격 및 활동상황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목적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규제활동을 발전시키고자 한다(Regulatory excellence). NCSBN은 근본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61개의 Board of Nursing을 통합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간호 실무를 증진시키고자 설립되었다.

#### ② 사업내용

NCSBN은 국가고시 문항 개발 및 시행, 간호실무 규제에 관한 정책분석과 간호실무 표준화, 간호면허 발급과 관련된 자료 제공 및 연구, 그리고 회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보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험관장 : NCSBN은 간호교육생들의 능력에 따라 면허를 부여하기 위한 두 개의 시험(NCLEX-RN®과 NCLEX-PN®)을 개발해 Board of Nursing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NCLEX-RN®은 간호사(Registered Nurse; RN)를 위한 면허시험이고, NCLEX-PN®은 준간호사(Practical/vocational Nurse; PN)를

- 위한 면허시험이다. 면허시험은 국가시험 서비스 와의 계약을 통해 실시되고 있다.
- 연구활동 : 간호사 직무분석 자료를 기초로 수행 해 NCLEX® 시험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공급해 주고 있다. 각 Board of Nursing으로부터 면허 부여와 시험에 관한 통계 자료를 수집하며 여러 가지 연구프로젝트를 실시해 멤버들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 간호실무와 교육활동 : NCSBN은 다양한 간호 실무와 규제를 위한 정보를 보급하고 있다. 1981년 이후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면허부 여 조건에 대한 자료를 관리해 오고 있으며, 간 호규제와 관련된 각종 세미나에서의 발표 등을 통한 교육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 정책분석 : NCSBN은 공중보건정책, 간호실무 그리고 간호교육과 관련된 이슈와 추세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해 간호규제에 영향을 미치는 다 양한 요소를 멤버들에게 고지함으로써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 출판홍보활동 : NCSBN은 간호규제(nursing regulation) 관련 저작물을 출간하고 있으며, 회의와 세미나 등을 주선하는 한편 NCSBN을 소개하기 위해 제작된 각종 홍보물을 보급하고 있다.

#### ③ 조직 및 인력구성

NCSBN은 Board of Directors와 Delegate Assembly에 의해 관리 감독되며, 실제적인 활동은 위원이 수행한다. Board of Director는 9명이 선출되며, Delegate Assembly 멤버는 61개의 Board of Nursing에서 2명씩 선정되어 구성된다. 23개의 각종 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두고 있다. 61개 State Board of Nursing은 50개의 미국 내 주와 District of Columbia, 그리고 5개 미국 영토 국가(American Samoa, Guam, Northern Mariana Islands, Puerto Rico, and the Virgin Islands)로 형성되어 있다. 총 37명의 상근직원을 두고 있다.

④ 법적지위 및 권한 : NCSBN은 The Board of Nursing Act에 준해 설립된 비영리단체이며, Board of Nursing은 Nurse Practice Act에 준한 규제 기구다.

⑤ 재정 : 각종 수수료, 회비, 사업수익금으로 충당 한다.

#### 2) 영국

영국을 대표하는 간호협회는 Royal College of Nursing of the UK다. 그러나 이 협회의 성격은 간 호사의 권리보호를 위한 조합(Union)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자율조정과는 거리가 있다. 반면 별도로 영국의 회에 의해 설립된 간호사, 조산사, 방문의료인(Health Visitor)를 위한 자치적인 조정단체로 Nursing & Midwifery Council(NMC)이 있다(NMC, 2004). NMC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목적

환자와 대상자에게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간호사, 조산사, 방문보건의료인의 질 관리를 하기 위함이다.

##### (2) 사업내용

- 주된 기능은 간호사와 조산사 그리고 방문보건의료인의 면허 등록을 유지하고 등록자들을 지도 편달한다.
- 업무상 과실이나 부적절한 간호수행을 관리 감독 하며, 위법행위로 인한 분쟁을 조정한다.
- 간호사와 조산사의 교육과정에 대한 질을 관찰하고, 학생들의 교육과정에 대한 기록을 관리한다.
- 간호사와 조산사를 위한 교육, 훈련과정, 실무와 실적에 대한 표준을 수립하고 이 표준을 따르도록 권고한다.
- 지역구 조직에 조산사들을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표준을 설정해 제공한다.

##### (3) 조직 및 인력구성

총 35명의 위원이 있으며 24명은 간호사·조산사·방문보건의료인 출신, 11명은 다른 분야 출신에서 선출된 위원들이다. NMC는 4개 위원회에 의해 운영된다. 그 밖에 영연방을 이루는 England와 그 외 4개국 (Scotland, Wales, Gymru, Northern Ireland)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제도 마련을 위해 연방 국가별 기구를 두어 지역적으로 간호의 질 향상을 위한 제반 규제활동을 하고 있다.

(4) 법적지위 및 권한 : NMC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는 "The Nursing and Midwifery Order 2001"이 2002년 입법화되었다. 의회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독립기구다.

(5) 재정 : 주로 등록자가 기부하는 기금으로 운영 된다.

### 3) 호주

호주도 호주 간호사의 대표조직인 Royal College of Nursing, Australia와는 별개로 간호자율기구로 Australian Nursing Council(ANC)을 설립·운영하고 있다(ANC, 2004). ANC는 1992년 간호규제를 위해 생성된 국가적 규모의 단체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목적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간호실무의 표준화를 꾀하고,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목적으로 설립됐다. 또한 간호전문직의 리더십과 전문성을 유도하기 위해 간호사들과의 밀접한 관계 형성과 전략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며, 국민과 정부와의 연계성을 향상시키는 일련의 활동을 하기 위함이다.

#### (2) 사업내용

ANC의 역할은 각 주와 관할 지역 내 간호규제기구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융통성 있고 효과적인 간호규제를 위한 국가 표준을 개발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기능은 다음과 같다.

- 간호사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데이터베이스를 유지 관리한다.
- 간호규제법에 영향을 미치거나 관련된 사항을 규명한다.
- 간호규제법이 세계적 추세에 맞춰 제도적으로 실시되도록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한다.
- 간호업무 자격에 관한 표준을 정한다.
- 질 향상 관련 사항 및 윤리강령과 행동지침을 제정한다.
- 외국 출신 간호사에 대한 자격검증을 실시한다.
- 외국 정부 기관과 전문 단체, 간호규제기구와의 협력체계를 증진한다.

#### (3) 조직 및 인력구성

ANC는 8개 지역 기구협회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기구는 법적인 통제력을 갖는 자율조정기구 역할을 하고 있다. 8개 주별 Board of Nursing의 주된 기능은 간호사들을 등록 관리하고 면허정지나 기타 전문인으로서의 자질이 의심되는 간호사들을 찾아내

는 한편 이들에게 간호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간호교육 프로그램 인정사업을 통해 양질의 간호인력이 배출될 수 있도록 주력하는 데 목적이 있다. Council은 일반인과 지역 간호단체로부터 선출된다. 위원은 총 10명이며 8명은 각 주와 관할 지역으로부터, 2명은 일반인으로부터 선출된다. 또한 8명의 주 대표는 각각 1명의 Deputy council member를 두고 있다. 그외 2개의 위원회(committees)와 2개의 자문위원회(advisory group)이 있어 Council 위원들에게 조언을 주고 있다. 기타 11명의 상근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4) 법적지위 및 권한 : ANC는 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독립기구이며, Nurse Act에 준해 간호사 면허등록 관리 사업을 통해 질 관리와 규제를 행사한다.

(5) 재정 : 수수료, 각종 수익금 및 이자,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 4) 캐나다

캐나다의 자율조정기구는 13개의 자치구역들이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의 기구와 구별된다. 즉 각 자치구역 간호협회들이 자체적인 규제기구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각 주의 특성에 따라 약간의 기능과 역할 차이는 있으나 간호 관련 법규가 존재하며 이를 근거로 간호면허관리기구로서 표준화된 교육과 실무를 위한 규제를 통해 간호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 자치구역 내 기구를 연합시키는 기능은 캐나다간호협회(Canadian Nurses Association; CNA)가 담당하고 있다(CNA, 2004). CNA가 미국, 호주, 영국에서와 같이 자율조정기구로 존재하면서 하부에 자치단체를 두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자율조정기구 역할을 하고 있는 각 지역 간호협회를 연합하기 위한 연방간호협회(120,000 RN 회원)격인 특색을 지니고 있다. 각 자치기구별 조직구조와 역할이 다양하여 여기에서 해당 내용은 생략하였다.

#### 5) 태국

태국의 Nursing Council of Thailand(NCT)는 1985년 Royal Decree of Professional Nursing and Midwifery Act B.E. 2528에 준해 설립되었다. NCT는 1971년 이후 의회 승인을 얻기 위해 계속되어

온 태국간호협회(Nurses' Association of Thailand)의 14년간의 노력에 의한 개가였다(NCT, 2004). NCT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목적

- Professional code of ethics에 따른 면허간호사, 조산사의 실무를 관찰한다.
- 전문직 간호사와 조산사의 교육, 연구, 그리고 직업적인 숙련도를 증진시킨다.
- 멤버들의 통합성과 위엄을 높인다.
- 간호와 조산, 그리고 공중보건의 기초가 되는 과학적 지식과 관련된 정보를 국민과 다른 기관에 교육하고 제공해준다.
- 정부에 간호와 조산의 숙련도, 그리고 국민의총체적인 건강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조언을 담당한다.
- 간호사를 위한 전문적인 대표기관으로서 간호사들의 관심 분야와 관련된 사항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 정의를 구현하도록 도와주며 모든 멤버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업무를 한다.

#### (2) 사업내용 및 권한

- 간호사, 조무사, 그리고 조산사의 면허등록과 부여 업무를 담당한다.
- 간호사, 조무사, 그리고 조산사의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시킬 수 있다.
- 간호, 조산과 관련된 교육과정에 대해 인정해준다.
- 간호와 조산 관련 교육기관에 인정사업을 수행한다.
- 간호, 조산과 관련된 교육과정과 교육기관에 대한 인증·인정에 대한 문서를 발행한다.
- 기타 Professional Nursing and Midwifery Act에 준해 간호사와 조산사에 대해 규제활동을 한다.

#### (3) 조직 및 인력구성

위원회는 3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6명은 정부에 의해 지명되고 나머지 16명은 투표로 선출된다. 모든 멤버는 RN이어야 하며 회장은 Nursing Council Committee 멤버에서 선출된다. 32명의 멤버는 각각 12개의 하부위원회에 소속되어 활동한다.

#### (4) 법적지위 : Professional Nursing and

Midwifery Act에 준해 의회에서 승인된 독립기구로 강력한 법적 권한을 위임받은 규제기구이다. 태국은 미국의 NLM과 NCSB의 방대한 역할을 NCT 한 기구에서 모두 담당하고 있다.

#### (5) 재정 : 정부지원, 등록비 및 회비, 기타 사업으로 생기는 수익금 및 이자로 충당된다.

#### 6) 일본

일본에서는 1948년 Public Health Nurse, Midwife, and Nurse Law가 간호사, 조산사, 공중보건간호사, 준간호사(Licenced Practice Nurse; LPN), 그리고 간호사들의 교육, 면허시험과 규제를 통한 질 관리를 위해 입법화되었고, 이는 보건복지부(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JNAN, 1999; RGCHNJ, 1998).

일본에서의 면허취득과 등록, 갱신 등과 관련한 제도를 살펴보면, 간호사, 공중보건 간호사, 그리고 조산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졸업한 자는 보건복지부에 의해 정해진 국가시험에 임해야 한다. 국가시험 합격자는 반드시 보건복지부가 발급한 면허를 소지하고 환자 간호를 위해 등록해야 하며, LPN 양성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은 관할 지역의 권한위임기구에 의해 규정된 면허시험을 보아야 한다. 이들의 면허는 영구적이며 갱신할 필요가 없다.

이와 같이 일본에서의 간호사 면허제도는 정부에 의해 직접적으로 관장되고 있으나, 1999년부터 일본간호협회(Japanese Nursing Association)에서는 정부의 지도 아래 협회에서 면허시험 시행, 면허부여와 관리를 제안해왔다(JNAN, 1999). 또한 현재까지는 간호 관련 단체에서 간호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정사업에도 관여하지 않고 정부 주도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다(Primomo, 2000).

### 3. 간호자율조정기구 모델(안)

문화고찰과 사례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간호자율조정기구가 지녀야 할 기능과 역할을 국내 현황에 맞게 제안하는 간호자율조정기구 모델(안)은 다음과 같다.

#### 1) 명칭

이 범인은 “재단법인 간호자율조정원(안)”이라 한다. 영문표기는 Korean Nursing Council(KNC)로 한다.

## 2) 목적

간호자율조정원(안)은 간호전문직의 자율조정기구로서 사회가 요구하는 간호의 책무를 다 할 수 있는 능력 있고 윤리적인 간호사 양성과 간호서비스의 질적 보장을 위한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 3) 사업내용

- 간호교육과정 표준화 사업을 수행한다.
- 간호교육기관의 인정사업을 효과적으로 공정하고 종합적으로 수행한다.
- 간호사 면허시험을 관장하고 면허 등록 및 유지 업무를 담당한다.
- 간호사 면허를 유지·관리하기 위해 규제와 징계 등 법적 권한을 수행한다.
- 무면허, 불법, 비전문적인 간호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한다.
- 간호와 관련된 연구와 정책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간호전문직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 4) 조직 및 인력구성

원장을 포함한 이사회 아래 운영되며 각 부는 실제적인 업무 진행을 위해 각각의 관련 위원회(총 8개)를 통해 감독된다<그림 1 참조>. 간호자율조정원(안)은 사업내용에 따라 크게 세 개의 독립부서, 즉 교육관리부, 면허·자격시험관리부, 그리고 심의규제부를 둔다. 교육관리부에서는 간호교육과정 표준화와 모든 간호교육기관 인정사업을 수행하며, 면허관리부에서는 면허시험을 관장하며 면허를 관리·유지시키는 사업을 한다. 마지막으로 심의규제부에서는 무면허, 부적절한 간호행위, 간호분쟁, 윤리적 문제, 그리고 저작권과 관련된 규제사업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간호자율조정원(안)은 이 세부서를 관리함과 동시에 그와 관련된 연구 및 정책 관련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 (1) 이사회

임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이사장 1인
- 간호자율조정원장
- 이사 20인 이내(이사장, 간호자율조정원장 포함)
- 감사 2인

이사회의 간호사와 비간호사의 구성비율은 4:1이며, 제도적으로 정착된 후 점차 비간호사의 비율을 확대해

나간다. 초기에는 자문위원회를 활용해 비간호사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이사는 간호·보건 분야 관계인사와 교육전문가, 법률가, 시민단체 관계자로 구성되며 당연직과 선임직으로 한다.

- 당연직 이사 : 관련분야의 다양한 간호전문인으로 구성한다.
- 선임직 이사 : 시민단체 관계자, 교육전문가(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교육협의회, 유관 단체), 임상전문가, 법률전문가, 간호계 지도자

### (2) 자문위원회

간호자율조정원(안)은 운영 전반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원장이 위촉한다.

### (3) 하부관리기구별 위원회 및 임무

주요 하부관리기구인 교육관리부, 면허·자격시험관리부, 심의규제부는 임무수행을 위해 기능별 위원회를 가진다<그림 1 참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부서별 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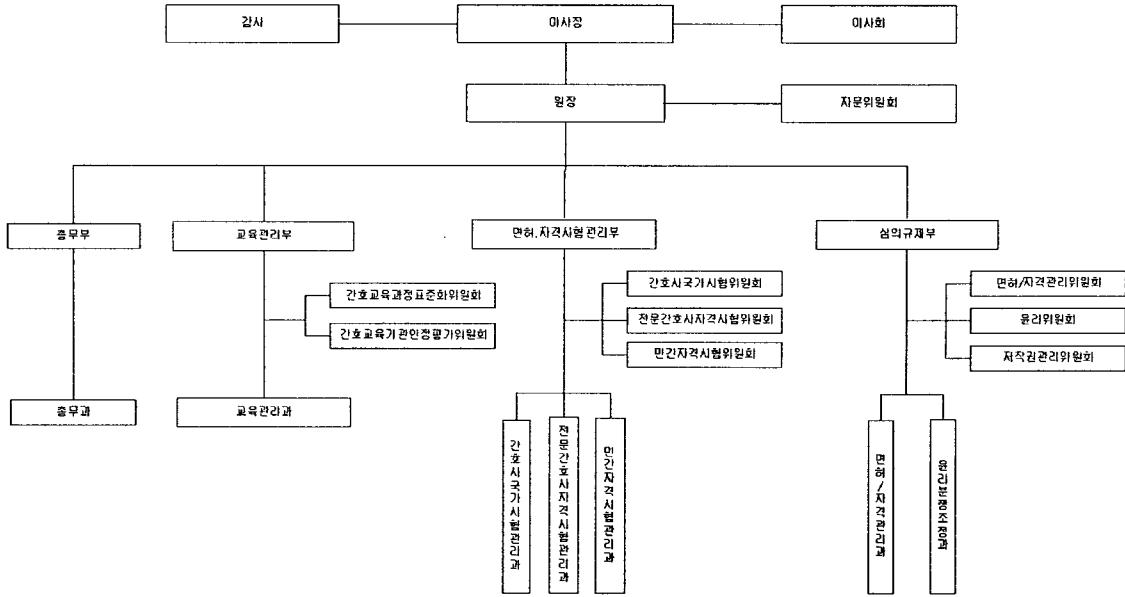
#### ① 교육관리부

교육관리부는 교육관리과를 두고 간호교육과정표준화 위원회와 간호교육기관인정평가위원회에 의해 운영된다. 간호교육과정표준화위원회는 간호교육과정표준화사업(표준제정, 심의 및 보완)을, 간호교육기관인정평가위원회는 간호교육기관 인정평가(평가기준 설정 및 시행 포함) 사업을 지휘 감독한다. 그 외 교육관리부는 연구, 출판, 학술사업, 관련 협회 및 대정부 사업에 참여한다. 또한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관련 사업을 수행한다.

#### ② 면허·자격시험관리부

면허·자격시험관리부는 간호사국가시험위원회, 전문간호사자격시험위원회, 민간자격시험위원회에 의해 지휘 감독을 받는다. 면허·자격시험관리부의 주된 기능은 국가시험, 전문간호사 및 민간 자격시험 관장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그 외 시험항목 개발 및 시험 제도, 시험 방법, 기준에 관한 조사 연구를 실시한다. 시험문항 개발관리, 문제 출제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며, 시험과 관련된 출판사업과 정부의 정책, 법 제정·개정, 정부조직 개편 및 정부사업에 참여한다. 또한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시험관련 사업을 수행한다.

#### ③ 심의규제부



<그림 1> 간호자율조정원(안) 조직도

심의규제부는 면허·자격관리위원회, 윤리위원회 및 저작권관리위원회를 둔다.

- 면허·자격관리위원회
  - 면허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정부로부터 위임 받아 이를 집행한다.
  - 등록관리와 면허소지자 재등록 자격 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 기타 간호사 면허·자격 관련 사항을 수행한다.
  - 외국 면허·자격 소지자에 대한 자격관리를 한다.
  - 전문간호사 및 기타 간호사 자격의 부여와 유지에 관한 조사 연구를 수행한다.
  - 무면허, 무자격자 간호행위 등을 감시 감독하며 적발된 자들에 대한 조치를 한다.
  - 윤리위원회
  - 간호분쟁, 간호윤리 및 법적 관련 제도를 조정한다.
  - 비윤리적인 간호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수행한다.
  - 저작권관리위원회
  - 저작권 분쟁, 심의 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저작권 보호 및 침해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수행한다.
  - 기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 (4) 상근직원

제반 업무는 총무부에서 관할하는 한편 간호자율조

정원(안)은 독립된 기관으로서 독립건물을 가지고 각 위원회를 보조해 원활한 실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부부서별 담당과별 적정수의 상근직원을 둔다.

#### (5) 기타

그 외에 고문변호사, 조사위원을 둘 수 있다.

#### 5) 법적지위 및 권한

의료 및 교육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 간호사 및 간호교육기관을 관리하기 위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법적 효력을 지닌 기관이다.

#### 6) 재정

재정은 인정사업과 면허시험에 관련된 인정서 및 면허증의 발부·갱신에 의한 수수료, 공과금, 징계에 의한 벌금, 기타 사업수익금, 출연금, 국가의 보조금 등으로 한다.

## IV. 논의

지금까지 국내외 자율조정관련 기구에 대한 문헌고찰과 사례분석을 통해서 한국형 자율조정기구에 대한 모델(안)을 제시하였다. 미국 NLN은 양질의 간호교육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준비된 간호인력의 배출 및 양성을 하는 한편 간호교육 프로그램을 평가해 이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앞에서도 논의됐지만 NLN의 NLNAC를 통한 인정사업은 여러 국가기구와 관련 단체로부터 인정받은 사업이다. 그러므로 NLN의 간호교육 프로그램 인정평가 결과는 간호면허 시험이나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규정에 반영되고 있다. NLN에서 인정한 간호교육 프로그램을 졸업한 자만이 미국간호면허시험이나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을 예로들 수 있다. NCSBN은 간호의 질을 관리하기 위한 기능을 능력 있고 준비된 개인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유지시켜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겠다는 데 그 근본 목적을 두고 있다. 미국의 특성상 실제적인 면허부여와 유지 관리는 Board of Nursing에서 Nursing Practice Act를 준거로 각 주의 Board of Nursing에 의해 실시되고 있으나 통합적인 관리의 필요성에 의해 NCSBN이 하나의 통합 체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실제적으로 간호실무와 규제에 관한 업무는 주별 Board of Nursing에서 수행하고 있고 NCSBN은 주별로 일관된 법적 규제를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된 사업목적이다. 그러므로 미국 내에서 주된 이슈는 주별로 표준화된 규제를 개발해 국민건강을 지키고 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면허를 부여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지지체계가 중요하다. 이를 NCSBN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Board of Nursing은 Nursing Practice Act에서의 규정을 각 주에 맞는 구체화된 규칙과 규제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제정된 규칙과 규제 항목은 Nursing Practice Act와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다. 규칙과 규제를 제정할 때 학생, 간호사, 일반인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다. 그 외 기관으로 전미간호협회(American Nurses Association; ANA)에서는 전문간호사의 양성을 목적으로 자격시험을 주관하고 자격부여 및 유지 등의 업무에 관여한다. 주별 간호협회는 State Board of Nursing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그들의 간호면허를 소지한 자들을 관리·등록하고 있으나 미국의 각 주 법규 특성상 개별적으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영국에서의 간호자율조정기구는 미국과는 달리 조산사와 분리되지 않은 것이 특징이며, 연방국가들의 다른 문화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자치단체를 위한 표준화를 설정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즉 미국의 NCSBN과 NLN의 통합기능을 NMC가 담당하고 있다. 면허관리와 간호교육 프로그램의 표준화와 관련된 방대한 기능과 역할을 한 기관이 담당함으로써 미국보

다는 체계적이지 못할 수도 있다. 호주는 미국의 NCSBN과 마찬가지로 실제적인 면허관리 및 규제는 각 지역 기구 별 8개 NRA에서 수행하고 있다.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인정사업은 실시되고 있지 않다.

이와같이, 미국은 간호교육 평가와 간호사 면허시험·면허유지·징계에 관한 역할을 NLN과 NCSBN이 나누어 수행하며 간호의 질 관리와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간호교육 프로그램의 평가와 간호사 면허시험·면허유지·징계 방법으로 주마다 관련기구를 두고 다시 중앙에서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특성은 미국이 자치적으로 주정부에 의해 간호법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는 지방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영국연방정부도 각 나라의 특성별 사업을 NMC에서 통합하는 역할을 하고, 호주의 ANC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된다. 캐나다에서는 특이하게 간호협회에서 각 주의 규제기구를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태국의 경우 강력한 법적 권한을 가지고 중앙 집중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 태국은 미국의 NLM과 NCSB의 방대한 역할을 NCT 한 기구에서 모두 담당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간호 및 조산법이 제정되어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자율조정기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 국민 대표자와 정책결정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고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제, 국민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게 함으로써 보건의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기능을 하게 된다.

현재 국내에서는 한국간호평가원이 그 역할을 일부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역할과 법적 지위가 확립되지 않았고, 정부로부터 규제기능을 갖는 기구로 인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 한국형 자율조정기구로 제안된 한국간호자율조정원(안)은 한국간호평가원의 기능과 외국의 자율조정기구들이 담당하고 있는 주요 역할들을 종합하여 한 기구로 제안되었다. 즉 교육의 표준화와 인정사업을 위한 교육관리부, 면허/자격시험관리와 심의규제를 위한 부서들로 구성되어, 미국의 NLM과 NCSBN 기능을 합친 기구이다. 한국간호평가원이 계획하고 있는 향후 사업 중 하나인 간호기관·간호서비스의 실무 평가사업에 대한 역할은 모델(안)에서 제외되었다. 그 이유는 간호실무 평가사업은 현재 병원협회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며, 그 역할분담의 모호성과 규모가 방대한 만큼 현 시점에서의 기능 분담은 무리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간호자율조정원(안)이 방대한 두 사업(국가시험관장을 포

함한 면허관리 및 규제기능과 간호교육과정 표준화 및 인정평가사업)을 모두 수행해야 한다고 제안되었지만 점차적으로 미국의 NLN과 NCSBN 같이 분리된 기구로 그 역할을 굳건히 다져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간호자율조정원(안)을 한 개의 기구로만 제한함으로써 생기는 이 연구의 한계이기도 하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자율조정기구의 성격 및 역할, 타 기구와의 관계 정립에 대한 방향 설정을 위해 각종 문헌 및 해외 관련 기구의 사례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간호자율조정기구 모델(안)을 개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국제적인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대응책의 하나로 국민을 보호하는 기능과 선진국 수준의 의료서비스와 경쟁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게 하기 위해 간호자율조정기구의 정착을 위한 제반 활동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를 위해 전개되어야 할 시급한 두 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선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항은 앞으로 간호자율조정원(안)이 의료 및 교육관련 법을 바탕으로 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아 자율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규정하는 법령 제정이 필요하다. 또한, 간호자율조정기구의 정착을 위해서는 간호법이 이론 시일 안에 의료법에서 독립, 제정되어야 한다.

둘째, 앞으로 간호자율조정원(안)이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재정마련이 급선무다. 법적 권한을 지닌 조직체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우수한 연구/행정 인력과 시설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문헌고찰로만 이루어져 각 기관의 조직과 인력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자료는 한국 실정에 맞는 자율조정기구 확립을 위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아직까지 자율조정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일부 간호전문인이나 정책결정자에게 간호자율조정기구의 존재 이유를 설명해줄 수 있으며, 현재 간호자율조정기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간호평가원이 그 기능을 확대 유지하고 순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정부 활동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 관련기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간호인들의 요구도를 반영하여 보완한다면 좀 더 바람직하고 현실성 있는 발전 방향이 제시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대한간호협회 (2000). 제67회 정기대의원 총회 자료집  
대한간호협회 (2001). 제68회 정기대의원 총회 자료집  
대한간호협회 (2002). 제69회 정기대의원 총회 자료집  
대한간호협회 (2003). 제70회 정기대의원 총회 자료집  
면허관련 공동연구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조사협회  
(2003). 의료인 면허관리기구 정관(안) 개발 연구  
한국간호평가원 정관 (2004). 한국간호평가원 정관.  
ANC(Australian Nursing Council) (2004). Available in March at [www.anci.org.au](http://www.anci.org.au).  
CNA(Canadian Nurses Association) (2004). Available in March at <http://www.cna-nurses.ca>  
JNAN(Japanese Nursing Association News) (1999). JNA News No. 27. Available in March, 2004 at <http://www.nurse.or.jp/jna/english/newsindex.html>.  
NCSBN(National Council of State Board of Nursing) (2004). Available in March at [www.ncsbn.org](http://www.ncsbn.org).  
NCT(Nursing Council of Thailand) (2004). Available in March at <http://www.moph.go.th/ngo/nursec/index.htm>.  
NLN(National League for Nursing) (2004). Available in March at [www.nln.org](http://www.nln.org).  
NMC(Nursing & Midwifery Council) (2004). Available in March at <http://www.nmc-uk.org>.  
Primomo, J. (2000). Nursing around the world: Japan - preparing for the century of the elderly. Online Journal of Issues in Nursing. 5(2), Manuscript 1. Available in March, 2004 at [http://www.nursingworld.org/ojin/topic12/tpc12\\_1.htm](http://www.nursingworld.org/ojin/topic12/tpc12_1.htm).  
RGCHNJ(Research Group of Community Health Nursing in Japan) (Ed.). (1998). *Community health system and nursing education in Japan*. Tokyo: Research Group of Community Health Nursing in Japan, Setsu Shiranouchi, Chairperson, Tokyo Medical and Dental University.

- Abstract -

## A Study on Developing a Korean-type Model of Self-regulatory Body in Nursing

*Yu, Sook Ja\** · *Yang, Soo\**

*Yoo, Yang Sook\*\* · Yong, Jin Sun\*\**

*Lee, Sun-Mi\*\* · Hong, Jin Ui\*\**

*Lee, Kee Lyung\*\**

**Purpose:** This study purposed to develop a model of self-regulatory body in nursing (SRBN), which is efficient under the current situation of Korea. **Method:** The study was conducted in three stages: 1) Analysis of the functions and roles of domestic institutes related to SRBN in their activities 2) literature review and case studies of overseas SRBN; and 3) development of the proposal. **Result:** Mostly, in foreign countries, SRBN performs the functions of improving the quality of nursing through education, standardization,

regulations, researches and activities toward the government and, consequently, enhances the reliability and quality of healthcare services. As a measure against the opening of the domestic medical market to the world in the future, this study proposed a model of SRBN in order to be equipped with functions to protect people and qualities to compete with healthcare services in advanced countries. **Conclusion:** This study explains the significance of SRBN to nurses and policy makers who do not recognize the necessity of a SRBN, and its results may be utilized as reference materials for the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which is currently playing the role of a SRBN, to perform activities toward the government for expanding, improving and maintaining its roles.

Key words : Regulation, Nursing, Ethics,  
Codes of ethics

---

\*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 College of Nursing, Catholic University of Korea